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9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2. 31.

발의자 : 김도읍 · 이진복 · 김재원
한선교 · 박덕흠 · 김현아
장석춘 · 김정재 · 홍철호
이은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.

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.

이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관리주체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66조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6조(기금의 운용과 관리) ①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6조(기금의 운용과 관리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</u> <u>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</u> <u>노력하여야 한다.</u>